|  |  |  |
| --- | --- | --- |
| **2015년 9월 3일 임시공휴일 기간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문제에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통지**인사부발[74]호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중국인민 항일전쟁 즉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전 70주년 기념일의 공휴일 대체휴무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면전[2015]호)에 의해 2015년 9월 3일이 전국적인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9월 3일 공휴일 기간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근로자가 고용업체의 업무 수요에 따라 9월 3일 공휴일 기간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보수와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보상휴가를 지급하할 수 없을 경우 당일 근로자 본인의 일급 또는 시급 기준의 200%를 근로보수로 지급해야 한다.인력자원사회보장부2015년 8월 18일 |  | **人力资源社会保障部****关于2015年9月3日放假期间安排劳动者工作工资计发问题的通知**人社部发〔2015〕74号各省、自治区、直辖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人力资源社会保障厅（局）：《国务院关于中国人民抗日战争暨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70周年纪念日调休放假的通知》（国发明电[2015]1号）明确，2015年9月3日全国放假一天。现就9月3日放假期间安排劳动者工作的工资计发问题通知如下：用人单位因工作需要，在9月3日放假期间安排劳动者工作的，应支付工资报酬并安排补休；对不能安排补休的，应按照不低于劳动者本人日或小时工资标准的200%支付工资报酬。人力资源社会保障部 2015年8月18日 |